

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신규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)</p> <p>① 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을 위해 '대학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")를 둔다.</p> <p>② 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설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그 밖의 혁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</p> <p>(신설)</p>	<p>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 실무위원회)</p> <p>① 혁신지원사업 사업운영부서 간 원활한 사업관리 추진을 위해 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)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사업총괄책임자가 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실무위원 구성은 당해연도 사업추진부서의 부서장 및 사업관리조직의 예산관리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추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업무 기반의 사업추진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지원사업 추진부서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설정 및 실행, 전략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기타 혁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문제 사항 논의 및 개선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</p>	<p>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변경</p>
<p>제10조(자체평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학내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. 단, 자체평가의 투명성·민주성 확보를 위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, 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자체평가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학내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. 단, 자체평가의 투명성·민주성 확보를 위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, 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되, 재학생의 경우 당해연도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~④ (현행과 동일)</p>	<p>재학생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변경</p>